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편드명 : 트러스톤 밸류웨이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·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 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</p>	<p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</p>

<p>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<p>② ~ ③ (생략)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(생략) <p>② (생략)</p>	<p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보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<p>③ (생략)</p>	<p>제38조(보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